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53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헌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미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가소5159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보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담한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별지 표 ‘피보험자’란 기재 32명의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전주시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비율은 다름)을 원고가 보장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이 사건 의원에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¹⁾을 시행받았다.

라. 피고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관련 진료비와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부분 금액, 비급여 항목 부분 금액 등을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청구하였고,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이 부분 금액 상당을 진료비로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납부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진료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실손의료비 상당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각각의 보험 내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금원인 19,5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의 통증 경감’이라는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사용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시술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시술받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위 진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비용을 임의비급여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피보험자들 역시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9,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피보전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데, 채무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 증명된 바가 없다.
- ②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와의 진료계약이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은 각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채권이다.
-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대위채권이 먼저 행사되어야만 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이유가 있다거나 피대위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음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생긴다고 볼 근거도 없다.
- ④ 채권자대위권에서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관한 무자력 또는

집행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개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집합되어 있는 것으로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하나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피보험자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는 피보험자와 의료진의 관계, 진료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1) 주요 통증 경로에 전극을 부착하고, 경피성 통증완화 전기자극장치를 이용하여 미세전류와 함께 무통증 정보를 신경으로 전달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요법

